

김육과 대동법



김육

23 (1580~1658)은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동법 시행을 주장한 실학자입니다. 네 차례 중국 사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차와 수레 사용을 건의했고, 화폐 주조 등 상업 발전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천문, 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상감 제조로 있을 때는 역법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시헌력을 채택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637년 김육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명나라 화가 호병이 그려준 것입니다. 소나무 아래 윤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김육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1751년 영조가 지은 어제찬이 있습니다



대동법

조선의 세금제도 가운데 지방의 특산물(공물)을 거두어들 이는 공납은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대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종류도 많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부정행위가 뒤따랐습니다

공납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집집마다 특산물을 거두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 소유량에 따라

로 통일하여 내게 한 것이 대동법입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물을 부과하여 백성의 부담은 줄고, 나라의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화폐경제와 상공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육 《호서대동사목》 충청도의 대동법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규칙